

##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

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을 위해 대상자에게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4. 4. 22.

###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



- 건 명: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
- 근 거: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1호
-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성명	생년월일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 내용			송달 불능 사유	주소
			예정된 처분 제목	처분 사유	처분의 내용		
이0호	98.05.20.	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	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	초기상담이후 상담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위한 방문상담 의무 불이행	-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- 종료 결정이 있는 날부터 3년간 취업지원 신청 제한(3년간 재참여 제한)	폐문 부재	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연수로11번길21 (이하 생략)

4. 공고기간: 2024. 4. 22.~2024. 5. 6.(15일간)

5.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국민취업지원과 최미란(Tel. 051-860-1908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